

-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-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위원 구성 방법 등을 보완하여 협의회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주체 구체화(안 제2조)
- 운영협의회 위원 구성기준 정비(안 제6조제2항)
 - 지역주민 중 군수가 위촉하되 제외대상자 규정
-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8조)
-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(안 제1조, 안 제4조, 제5조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농어촌 등 보건의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1조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○ 그 밖의

가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나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23.10.19.~2023.11.7.)

다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라. 성별영향평가 : 의견반영(2023.10.24가족지원과)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1조 (보건지료소운영협의회)에 따라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위원 구성 기준 등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- 관계법령 저촉여부, 개정목적,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.